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1
----------	------

2020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찬성자 10명)
- 나. 발의일자 : 2020년 4월 2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 라. 상정결과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정진술 의원)

가. 제안이유

-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20.9월 예정)에 따라 동 시설을 서울 특별시립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체육시설 이용시 개인연습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에 대한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운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신설함(안 제16조 제2항 제11호)
 - 11. 산악문화체험센터
-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기능·위치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별표에 추가 규정함
 - 안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산악문화체험센터 명칭·기능·위치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1. 개인연습사용료,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목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3” 산악문화체험센터 추가 규정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2)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3)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산악문화체험센터 추진경과

- 1993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정 이후 8,000m급 14좌 및 7개 대륙 최고봉 등정, 세계 3개 극점 도달 등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2011년 안나푸르나 등반 도중 실종된 산악인 고(故) 박영석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하 ‘재단’)이 ‘박영석 기념관’을 짓기로 함.

- 사업기간 : 2013.1.~2020.8
- 위 치 :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상암동 481-231)
- 규 모 : 대지 3,000㎡, 건물 2,178.30㎡(지상2/지하1)
- 건립방식 : 박영석재단(외장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 서울시(토지 제공, 내장공사)
- 사업예산 : 총 84.5억(국비 50억, 시비 20억, 구비 10억, 성금 및 재단 출연금 4.5억)

- 서울시는 시유지(3,000㎡)를 제공하고 재단이 국비(50억), 구비(10억), 성금(27억) 모금을 통해 준공 후 최장 20년 무상 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우리 의회는 '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기부채납)을 의결하였음.
- 그러나 재단의 성금모금액이 목표에 미달(27억 중 2.5억 모금)하여 '18년 3월 공정을 93%인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재단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건축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¹⁾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변경('19년 6월)²⁾, 서울시의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변경계획('19년 6월)³⁾을 통해 서울시의 예산지원으로 완공 후 개관하기로 하였고
- 우리 의회에서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추경예산 20억을 승인하였으며, '19년 12월 16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음.

1) 박영석담험문화재단 20190522_01, 2019.5.22.(붙임 1)

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705, 2019.6.3.(붙임 2)

3) 서울시 체육정책과-7454, 2019.6.13.(붙임 3)

산악문화체험센터 주요시설

구분	면적(m ²)	내 용
지하1층	1,500.81	시청각실, 고산체험실, 다목적실 등
1층	441.87	안내데스크, 상설전시실 등
2층	235.62	기획전시실, 디지털 체험영상실 등
지붕층		카페테리아
실외		건물 외벽을 활용한 전문 클라이밍장



〈현장사진〉



〈클라이밍 암벽장〉

나. 개정조례안 검토

(1)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9월 개관 예정인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립체육시설로 명기하고, 체육시설 이용시 개인연습 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전용사용료에 대한 부과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위탁 근거 규정

- 현행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잠실운동장의 일부 시설, 장충체육관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서남권돔구장은 같은 조례에 의해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창동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사무는 도봉구에 위임하고 있으며, 주경기장을 비롯한 잠실운동장의 4개 시설과 목동운동장의 2개 시설, 신월야구공원, 구의야구공원은 체육시설사업소가 직영하고 있음.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 장충체육관 -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 - 독섬승마훈련원 - 서울월드컵경기장 -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 - 구의야구공원 - 신월야구공원 - 서남권돔구장
체육시설사업소 직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 목동운동장(주경기장, 야구장) - 신월야구공원 - 구의야구공원
시설공단 대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충체육관 - 서울월드컵경기장 - 서남권돔구장(제16조제6항)
서울시교육청 위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제2수영장
민간위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야구장(LG·두산) - 목동빙상장(와이키키) - 효창운동장(시 축구협회)
도봉구 위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동문화체육센터(제23조제2항)

-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위탁·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개관에 대비하여 운영자 선정을 준비 중이므로 위탁·운영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3) 사용료 및 수강료 산정

- **클라이밍장 개인연습사용료**는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에 있는 유사시설⁴⁾의 사용료를 비교하고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용역 결과⁵⁾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사용료의 상한선은 다른 시설의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하한선의 2배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대상	사용료(원)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원가계산	산악문화체험센터
성인	2,000	3,000	3,000	3,000	3,000~6,000
청소년	1,500	2,000	2,000	2,000	2,000~4,000
어린이	1,000	1,500	1,500	1,500	1,500~3,000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에 있는 유사시설의 사용료를 비교하고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다른 시설 수강료를 참고하여 적정금액으로 조정하였고, 수강료의 상한선은 하한선의 2배 금액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대상	수강료(원)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	원가계산	산악문화체험센터
성인	초급 50,000 중급 60,000	60,000	실내 50,000 실외 100,000	36,000	36,000~72,000
청소년		45,000		32,000	32,000~64,000
어린이		36,000		-	30,000~60,000

4)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은평인공암벽장(「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등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2019년 11월)

-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시청각실의 전용사용료는 산악문화체험센터 원가계산용역에 근거하여 유사시설인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 갤러리의 1일 대관료 기준 1,409원/㎡를 적용하였으며, 클라이밍장 전용사용료는 중랑구, 은평구, 영등포구의 유사시설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119.99㎡)	158,000~205,400		
	다목적실(249.96㎡)	352,000~457,600		
	시청각실(164.56㎡)	232,000~301,600		
	클라이밍장(루트당)	25,000~32,500		
중랑스포츠클라이밍장(루트당)		25,000(2시간)		
은평인공암벽장(루트당)		25,000(2시간)		
영등포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루트당)		25,000(2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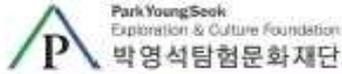
(3) 종합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건립되는 산악문화체험센터의 관리·운영 또는 그 위탁을 위해 조례 적용대상 체육시설로 추가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며,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서울시체육시설로 조례에 편입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며, 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범위는 유사시설의 사용료·수강료 및 원가계산용역의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됨.

-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의회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하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에서도 ‘원안 가결’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문서번호 : 20190522_01
 수 신 : 서울특별시
 (경 유)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장
 제 목 : 산악문화체험센터 준공 후 기부채납의 건

1. 서울특별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고 건립 부지를 제공받아 당 재단에서 건물을 준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임.
3. 당 재단은 아래 명기된 재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확약함.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1-231번지
- 종류 : 건물
- 명 칭 : 산악문화체험센터
- 규모(면적) : 대지면적 3,000㎡, 건물 연면적 2,330㎡(지상2층, 지하1층)

당 재단은 서울시에 기부를 조건으로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산악문화체험센터의 축조를 허가받았으나, 사업기간 내 총 사업비 80억원 중 '성금 및 기타재원' 20억원 모금 미비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사업 계획대로 시설물 완공은 어려우나 외장공사까지는 완료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보전등기 후 상기 재산을 서울시에 기부할 것을 확약하오니, 서울시에서 남은 공사부분(내장공사 등)에 대하여 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당 재단은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끝-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알림

1. 관련근거

- 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900(2015.5.11, 「산악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2015년 기금 지원 승인 알림)
- 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1133(2017.3.17,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 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2617(2016.6.27, 「산악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기간 변경 승인)
- 라.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6567(2019.5.22,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관련 검토 요청)
- 마.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20190500-01(2019.5.31,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2. 귀 기관의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운영 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2017. 1. 1 ~ 2019. 6. 30			2017. 1. 1 ~ 2019.12.31		
총사업비	80억원			64억5천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50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억원	4억5천만원
기부채납 및 사업종료 시점	건립완공 후 서울시 기부채납 및 사업종료 (실내외 건립 완료 후)			건물 외장공사 완료 후 서울시 기부채납 및 사업종료 (내장공사는 서울시에서 20억원 추가투입하여 완료)		

나. 변경사유

- 자부담액(민간성금 및 기타재원) 부족으로 2018.3월 이후 센터 건립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공정률 93%), 서울시 추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기간, 기부채납시점 등 변경으로 산악문화체험센터의 원활한 건립 완료

다. 변경 승인 조건

- 서울시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기부채납 받은 후, 건립을 완료하여 개관

3. 아울러 귀 재단에서는 산악문화체험센터가 목적에 맞게 건립완료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주시고, 향후 위 승인 내용이 변경 될 경우 즉시 우리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신자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행정사무관 인숙진 체육정책과장 진영 2019.6.3
강수상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705 (2019. 6. 3.) 접수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체육정책과 / http://www.mcst.go.kr

전화번호 044-203-3115 팩스번호 044-203-3489 / genny@korea.kr / 비공개(7)

붙임 3

예산지원 등 협조 요청 공문(문체부 →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수신 서울특별시(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관련 검토 요청 회신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6567(2019.5.22,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 관련 검토 요청

2. 위 호로 귀 시에서 문의한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의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동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 시에서는 동 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건립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활용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진행경과 등을 우리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계획 변경 승인 알림 문서 1부.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사무관 인숙진 체육정책과장 전결 06/03
강수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714 (2019.06.03.) 접수 체육정책과-7042 (2019.6.3.)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 http://www.mcst.go.kr
체육정책과
전화 044-203-3115 /전송 044-203-3489 / genny@korea.kr / 부문공개(5)

붙임 4

산악문화체험센터 위치



〈산악문화체험센터 위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1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강동길, 정지권, 우형찬, 송도호,
박순규, 추승우, 황인구, 김인호,
송아량 의원(9명)

1. 제안이유

- 위 조례는 산악문화체험센터 개관('20. 9월 예정)에 따라 동 시설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체육시설 이용시 개인연습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등 사용료에 대한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탁·운영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신설함(안 제16조 제2항 제11호)
 - 11. 산악문화체험센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기능·위치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별표에 추가 규정함
 - 안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산악문화체험센터 명칭·기능·위치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2” 1. 개인연습사용료,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목 추가 규정
 - 안 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3” 산악문화체험센터 추가 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악문화체험센터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추가 한다.

명 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산악문화 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상암동 481-231)

별표 2 제1호 개인사용료에 클라이밍장을 추가 한다.

시 설		금 액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 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별표 2 제2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에 사.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추가한다.

사. 산악문화체험센터

시 설	대 상	수 강 료	비 고
클라이밍장	성 인	36,000~72,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별표 3 전용사용료에 산악문화체험센터를 추가 한다.

시 설		체 육 경 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 일반행사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신설> ③ ~ ⑨ (생략)</p>	<p>제1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u>산악문화체험센터</u> ③ ~ ⑨ (현행과 같음)</p>																									
<p>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명칭</th> <th style="width: 25%;">시설명</th> <th style="width: 25%;">기능</th> <th style="width: 25%;">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신설></td> </tr> </tbody> </table>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신설>				<p>별표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명칭</th> <th style="width: 25%;">시설명</th> <th style="width: 25%;">기능</th> <th style="width: 25%;">위치</th> </tr> </thead> <tbody> <tr> <td>산악문화 체험센터</td> <td>클라이밍장</td> <td>클라이밍</td> <td>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상암동 481-231)</td> </tr> </tbody> </table>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산악문화 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상암동 481-231)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신설>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산악문화 체험센터	클라이밍장	클라이밍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상암동 481-231)																							
<p>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p> <p>1. 개인연습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시설</th> <th style="width: 50%;">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신설></td> </tr> </tbody> </table>	시설	금액	<신설>		<p>별표2 개인사용료(제7조 1항 관련)</p> <p>1. 개인연습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style="width: 50%;">시설</th> <th colspan="2" style="width: 50%;">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 25%;">클라이밍장</td> <td rowspan="3" style="width: 25%;">산악문화체험센터</td> <td style="width: 10%;">성인</td> <td style="width: 40%;">3,000~6,000</td> </tr> <tr> <td>청소년</td> <td>2,000~4,000</td> </tr> <tr> <td>어린이</td> <td>1,500~3,000</td> </tr> </tbody> </table>	시설		금액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시설	금액																									
<신설>																										
시설		금액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인	3,000~6,000																							
		청소년	2,000~4,000																							
		어린이	1,500~3,000																							
<p>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 <신설></p>	<p>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사. 산악문화체험센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시설</th> <th style="width: 15%;">대상</th> <th style="width: 40%;">수강료</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width: 15%;">클라이밍장</td> <td style="width: 15%;">성인</td> <td style="width: 40%;">36,000~72,000</td> <td rowspan="3" style="width: 30%;">월 8회 기준</td> </tr> <tr> <td>청소년</td> <td>32,000~64,000</td> </tr> <tr> <td>어린이</td> <td>30,000~60,000</td> </tr> </tbody> </table>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 8회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시설	대상	수강료	비고																							
클라이밍장	성인	36,000~72,000	월 8회 기준																							
	청소년	32,000~64,000																								
	어린이	30,000~60,000																								
<p>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시설</th> <th style="width: 15%;">체육경기</th> <th style="width: 15%;">체육행사</th> <th style="width: 45%;">공공 문화예 술 일반행사</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신설></td> </tr> </tbody> </table>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 문화예 술 일반행사	<신설>				<p>별표3 전용사용료(제7조 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시설</th> <th style="width: 15%;">체육경기</th> <th style="width: 15%;">체육행사</th> <th style="width: 45%;">공공 문화예 술 일반행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style="width: 25%;">산악문화 체험센터</td> <td colspan="2" style="width: 30%;">기획전시실</td> <td style="width: 40%;">158,000~205,400</td> </tr> <tr> <td colspan="2">다목적실</td> <td>352,000~457,600</td> </tr> <tr> <td colspan="2">시청각실</td> <td>232,000~301,600</td> </tr> <tr> <td colspan="2">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td> <td>25,000~32,500</td> </tr> </tbody> </table>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 문화예 술 일반행사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 문화예 술 일반행사																							
<신설>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 문화예 술 일반행사																							
산악문화 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205,400																							
	다목적실		352,000~457,600																							
	시청각실		232,000~301,6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32,500																							